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

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5. 8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의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,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유해야생동물 및 먹이주기에 관한 정의 (안 제2조)
○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4조)
○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2009년 6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을 통해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나, 기존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필요 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유해야생동물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포획만 제시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 - 이에 2024년 1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 외에도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한편, 영등포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7건으로,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법 제23조의3제2항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‘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’ 현수막 설치 등 단편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유해야생동물’과 ‘먹이주기’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)는 도시공원, 기반시설,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4조(금지구역의 지정 절차)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금지·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, 지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

단됨.

- 안 제5조(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)는 필요시 금지구역의 변경·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, 그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함.
- 안 제6조(금지구역의 표시)는 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7조(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)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·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,
- 금지구역의 지정 사유·절차·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여, 구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,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
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9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8. .
발의자: 이성수, 우경란, 정선희
이순우 의원 (4인)

1. 제안이유

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,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해야생동물 및 먹이주기에 관한 정의 (안 제2조)
- 나.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4조)
- 다.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

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해야생동물”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
2. “먹이주기”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.

제3조(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(이하 “금지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
3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

4.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,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

제4조(금지구역의 지정 절차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 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.

1. 위치 및 범위

2. 지정 근거 규정

3. 지정 사유

4. 지정 날짜

5.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

6.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6조(금지구역의 표시)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와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

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)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